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0년 하반기 국제출원 소식지

2020. 12

Contents

- I.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소식
- II.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소식
- III. 헤이그(Hague) 국제출원 소식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소식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

1.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2. 코로나19 팬데믹
3. 2019년 PCT 통계자료
4. PCT 실무그룹
5. PCT 기술협력위원회
6.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7. 협력심사 시범사업
8. 유용한 도움말
9. PCT 시스템 가입국

전자적 통신수단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

□ PCT 규칙 82의4.2

- PCT 동맹총회는 지난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1차 회의에서, 다른 규칙 개정사항들과 함께, 관청이나 기관에서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특정 기간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면제에 관한 새로운 PCT 규칙 82의4.2를 채택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국제사무국

-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한 국제사무국은, ePCT 시스템이나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사용 중이었으나 국제사무국의 특정 업무일에 최소 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PCT 규칙 82의4.2(a)에 따라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 이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PCT 규칙 및 PCT 시행세칙에 규정된 모든 기한에 적용됩니다. 또한, 국제사무국에서 출원인에게 발급한 요구서나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우선권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PCT 규칙 82의4.2(a)에 따라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의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 1) 특정 날짜에 ePCT 시스템이나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
 - 2) ePCT 시스템이나 PCT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국제사무국의 익일 업무일에 해당 절차를 수행

□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하는 PCT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기간 연장 종료

- 2020년 4월 9일 게시된 공지문에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통지서(서식 PCT/RO/117)의 발급을 2020년 5월 31일까지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0년 5월 27일자 후속 공지문에서 해당 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추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4월 9일 공지한 바와 같이, 요청이 있을 시 특정 PCT 기간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PCT 규칙 82의4.1을 계속 적용하는 한편, 필요한 PCT 수수료를 미납한 데 대해 서식 PCT/RO/117을 2020년 7월 1일부터 다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례적 IP 관청 휴무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포함]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상황 때문에, 국제사무국은 많은 PCT 관청들이 이례적으로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관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날짜 중 만료되는 경우, 해당 기한이 연장되어 해당 관청이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다시 열리는 날인,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각 관청의 이례적 휴무 여부는 아래 "IPO 휴무일"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
- 상기 페이지에는 국제사무국이 해당 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휴무일만 나와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청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WIPO 펄(PEARL)*

- WIPO 펄에 약 1500개의 코로나19 관련 용어가 10개 언어로 새로 추가되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법 및 진단법을 개발하려는 혁신가들에게 기준점이 될 용어들과 이들의 타국어 대응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PCT 출원서 및 국내 특허문헌에서 파생된 수많은 과학기술 용어와 함께 주요 PCT 법률 용어를 무료로, PCT 공개언어 10개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모두로 제공합니다.

* WIPO의 다국어 용어 데이터베이스

3 2019년 PCT 통계자료

□ PCT 연례보고서 [Yearly Review]

- 2020년 PCT 연례보고서에는 2019년 PCT 관련 활동 및 변동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9년 PCT 출원(상위 출원국/상위 출원인/기술분야별 출원 포함)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국제특허제도인 PCT 의 운영실적 및 2018년(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년도)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 올해 PCT 연례보고서의 특별 테마는 “상위 50 개 PCT 클러스터”로, PCT 출원 행위를 PCT 출원서에 이름이 포함된 발명자의 소재지에 기반하여 국가 아래 단위로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 및 대전이 상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 클러스터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PCT 출원에 기재된 혁신들의 발생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다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PCT 연례보고서 영문판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wipo.int/pct/ko/activity/index.html

4 PCT 실무그룹

2020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제13차 PCT 실무그룹(PCT Working Group) 회의가 하이브리드 회의(hybrid meeting)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개최된 첫 WIPO 기술 회의였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및 여러 대표단은 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했고, 또 여러 대표단은 물리적으로 참석했습니다.

□ PCT에서의 WIPO 표준 ST.26의 이행

- 실무그룹은 PCT 규칙 개정사항을 제출하여 2021년 상반기에 개최될 PCT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표현을 위한 WIPO 표준 ST.26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원되는 국제출원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PCT 보충적 국제조사 검토

- 실무그룹은 이용률이 낮아도 현재의 보충적 국제조사제도를 유지할 것을 PCT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5 PCT 기술협력위원회

□ PCT제31차 PCT 기술협력위원회 회의

- PCT 기술협력위원회는 유라시아특허기구(EAPO)를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임명할 것을 PCT 총회에 권고했습니다.

6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 국내/지역 특허법의 특정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링크

- “Certain Aspects of National/Regional Patent Laws, Revised Annex II of document SCP/12/3 Rev.2: Report on the International Patent System”라는 제목의 해당 페이지에는 다음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정보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행기술, 신규성, 진보성(자명성), 공지예외주장 기간, 개시 요건 (sufficiency of disclosure), 특허부여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에서 제외되는 대상 및 권리의 예외 및 제한
 - 해당 내용은 특허법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의 틀 안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 국제사무국 휴무일 및 올해 연말 국제공개 일정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국제사무국의 주말 이외 휴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년 12월 25일(금) 2020년 12월 31일(목) 2021년 1월 1일(금)
 -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업무를 하고, 2021년 1월 4일(월)에 평소처럼 업무를 재개합니다.

- PCT 출원은 다가오는 연휴기간 중 2020년 12월 24일(목)에는 평소대로 공개되나, 그 다음 주에는 하루 앞당겨 2020년 12월 30일(수)에 공개됩니다. 해당 출원들의 국제공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동사항의 접수 마감시한은 각각 2020년 12월 8일(화)과 2020년 12월 15일(화) 자정(CET)입니다.

□ 수수료 일부 변경(2021.1.1.)

- 2021년 1월 1일부터, 환율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제출원의 수수료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조사료 : ISA/AT(2,422,000원), ISA/AU(1,829,000원), ISA/JP(767,000원), ISA/SG(1,609,000원)
- 취급료 : 253,000원
- 참조자료 :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출원 분량 관련 제외)
 - 수리관청 선택, 우선권주장 기재, 출원인의 국적 및 거주국, 국제조사기관 선택, 출원언어, 전자출원방식
 - *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 국제조사기관 선택, 출원언어

7 협력심사 시범사업

□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 PCT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이 출원인의 구체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제기관들은 시범사업 운영단계에서 약 460건의 출원을 수리했습니다. 이러한 출원들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로 출원되었고, 서열목록과 발명의 단일성 결여와 같은 다양한 기술분야와 특별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 협력심사 시범사업 운영단계는 2020년 6월 30일 종료되어, 2020년 7월 1일 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신규 출원은 접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접수된 출원들은 국내단계 처리까지 추적하여 협력심사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8 유용한 도움말

□ 국제출원의 요소가 잘못 제출된 경우 올바른 요소의 제출

- 청구범위를 다른 출원에서 가져와 잘못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시점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를 사례로 하여 설명합니다.
- 올바른 요소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야 잘못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택하든 (우선권 회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유효하게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 국제조사기관이 해당 누락부분이나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이 국제출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고 나서야 연락받은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PCT 규칙 40의2.1 에 따라 출원인에게 추가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잘못 제출된 요소를 올바른 것으로 단순 교체하도록 수리관청에 요청하여 잘못 제출된 요소가 올바른 요소로 교체되는 경우, 잘못 제출된 부분은 해당 출원에서 삭제되어 국제출원의 일부로서 공개되거나 PATENTSCOPE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제3자 공개

- 국제예비심사 파일이 기밀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예비심사 파일은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IPRP (제2장))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라고도 불림)가 작성된 후에는 더 이상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 PCT 제38조는 국제사무국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 어떠한 자 또는 당국에게도 국제예비심사 파일을 무단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PRP(제2장)가 작성되기 전에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공개하려면 출원인의 청구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IPRP(제2장)가 작성된 후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PCT 규칙 71.1(a)에 따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사본을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에 선택관청에 사본을 송부합니다.
- 2004년 1월 PCT 규칙 94.1(c)가 발효되어 국제사무국이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IPRP(제2장)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관청에서 국제사무국이 IPRP(제2장)를 PATENTSCOPE를 통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는데,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1일 발효된 PCT 규칙 71.1(b) 및 94.1(c) 개정사항에 따라,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IPEA가 이날 또는 그 이후에 접수하거나 작성한 모든 기타 서류도,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에 PATENTSCOPE에 공개됩니다. 모든 IPEA가 새로운 PCT 규칙 71.1(b)를 시행할 기술적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국제사무국에 이러한 서류를 송부할 것입니다.
- 개정된 규칙은 국제예비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선택관청과 대중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선택관청은 2020년 7월 1일 전에는 IPEA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었던 해당 서류들을 포함해, 국제예비심사 파일에 PATENTSCOPE라는 단일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9

PCT 시스템 가입국

□ PCT 가입 체약국 현황

- 2020. 12월 말 현재,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체약국은 153개국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KZ	카자흐스탄(Kazakhstan)
AG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LA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L	알바니아(Albania)	LC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O	앙골라(Angola)	LK	스리랑카(Sri Lanka)
AT	오스트리아(Austria)	LR	라이베리아(Liberia)
AU	호주(Australia)	LS	레소토(Lesotho)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T	리투아니아(Lithuan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BB	바베이도스(Barbados)	LV	라트비아(Latvia)
BE	벨기에(Belgium)	LY	리비아(Libya)
BF	브루키나파소(Burkina Faso)	MA	모로코(Morocco)
BG	불가리아(Bulgaria)	MC	모나코(Monaco)
BH	바레인(Bahrain)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J	베냉(Benin)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G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BR	브라질(Brazil)	MK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BW	보츠와나(Botswana)	ML	말리(Mali)
BY	벨라루스(Belarus)	MN	몽골(Mongolia)
BZ	벨리즈(Belize)	MR	모리타니(Mauritania)
CA	캐나다(Canada)	MT	몰타(Malta)

CF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MW	말라위 (Malawi)
CG	콩고(Congo)	MX	멕시코 (Mexico)
CH	스위스(Switzerland)	MY	말라위 (Malawi)
CI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MZ	모잠비크(Mozambique)
CL	칠레(Chile)	NA	나미비아(Namibia)
CM	카메룬(Cameroon)	NE	니제르(Niger)
CN	중국(China)	NG	나이지리아(Nigeria)
CO	콜롬비아(Colombia)	NI	니카라과(Nicaragua)
CR	코스타리카(Costa Rica)	NL	네덜란드(Netherlands)
CU	쿠바(Cuba)	NO	노르웨이(Norway)
CY	키프로스(Cyprus)	NZ	뉴질랜드(New Zealand)
CZ	체코(Czechia)	OM	오만(Oman)
DE	독일(Germany)	PA	파나마(Panama)
DJ	지부티(Djibouti)	PE	페루(Peru)
DK	덴마크(Denmark)	PG	파푸아뉴기니
DM	도미니카(Dominica)	PH	필리핀(Philippines)
DO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PL	폴란드(Poland)
DZ	알제리(Algeria)	PT	포르투갈(Portugal)
EC	에콰도르(Ecuador)	QA	카타르(Qatar)
EE	에스토니아(Estonia)	RO	루마니아(Romania)
EG	이집트(Egypt)	RS	세르비아(Serbia)
ES	스페인(Spain)	RU	러시아(Russian Federation)
FI	핀란드(Finland)	RW	르완다(Rwanda)
FR	프랑스(France)	S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GA	가봉(Gabon)	SC	세이셸(Seychelles)
GB	영국(United Kingdom)	SD	수단(Sudan)
GD	그레나다(Grenada)	SE	스웨덴(Sweden)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포르(Singapore)

GH	가나(Ghana)	SI	슬로베니아(Slovenia)
GM	감비아(Gambia)	SK	슬로바키아(Slovakia)
GN	기니(Guinea)	S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GQ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SM	산마리노(San Marino)
GR	그리스(Greece)	SN	세네갈(Senegal)
GT	과테말라(Guatemal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GW	기니비사우(Guinea Bissau)	SV	엘살바도르(El Salvador)
HN	온두라스(Honduras)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HR	크로아티아(Croatia)	SZ	에스와티니(Eswatini)
HU	헝가리(Hungary)	TD	차드(Chad)
ID	인도네시아(Indonesia)	TG	토고(Togo)
IE	아일랜드(Ireland)	TH	태국(Thailand)
IL	이스라엘(Israel)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N	인도(India)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R	이란(Iran)	TN	튀니지(Tunisia)
IS	아이슬란드(Iceland)	TR	터키(Turkey)
IT	이탈리아(Italy)	TT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JO	요르단(Jordan)	TZ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JP	일본(Japan)	UA	우크라이나(Ukraine)
KE	케냐(Kenya)	UG	우간다(Uganda)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H	캄보디아(Cambodia)	UZ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KM	코모로(Comoros)	VC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KN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VN	베트남(Viet Nam)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S	사모아(Samoa)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Z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KW	쿠웨이트(Kuwait)	ZM	잠비아(Zambia)
		ZW	짐바브웨(Zimbabwe)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소식

마드리드
(Madrid)
국제출원

1. 마드리드 가입 회원국 및 선언사항
2.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개정
3. 회원국 변동 사항
4. 국제사무국 공지 사항
5. 마드리드 관련 국내법 개정 사항
6. 마드리드 시스템 체약당사자 현황

1

마드리드 가입 회원국 및 선언사항

-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 2021.1.12. 발효 예정**
 - 107번째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으로,
 - 선언사항으로는
 -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s 5(2)(b), 5(2)(c)에 따라 가거절통지 기한은 국제사무국의 지정국 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이며, 이후 이의 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가 가능하고,
 - Article 8(7)(a)에 따라 개별수수료*를 부과하며,
 - * 하기 3. 회원국 변동사항 - 개별 수수료 변동 참조
 - Rule 7(2)에 따라, 국제출원/사후지정 시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지정하는 경우 표장 사용의사에 대한 선언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해 MM2의 11번 항목과 MM4의 4번 항목의 각주 2에 표시될 것입니다.
 - Rule 27ter(2)(b)에 따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국내법이 상표등록의 병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무국에 병합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0/madrid_2020_63.pdf

2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개정

- **마드리드 규칙(Rule) 3·9·25·36조 관련 개정 – 2021.2.1. 발효 예정**
 - 제54차 마드리드 총회(Assembly of the Madrid Union, '20.9.21-25 개최)에서 채택된 사항으로,
 - 출원인/권리자 및 대리인의 이메일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출원서(MM2), 명의변경신청서(MM5) 및 대리인선임신청서(MM12)의 관련 항목에 이메일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 이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WIPO의 우편송달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WIPO는 국제등록 권리자 및

대리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메일주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adrid Monitor에서 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우편봉투 아이콘(✉)이 나타나면 해당 건의 권리자/대리인은 'Contact Madrid'를 통해 이메일주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3 회원국 변동 사항

□ 영국 - 브렉시트 관련 후속 조치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20.1.1일 발효)와 관련해
 - 전환기간('20.1.1~'20.12.31)에 제출된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사후지정 신청에서 'EM'을 지정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보호 대상이지만,
- 유럽상표청(EUIPO)의 결정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2020.12.31일까지 등록결정된 경우, 영국특허청(UKIPO)이 권리자에 비용부과 없이 영국 국내등록부를 자동 생성해서 영국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관리합니다. 이때 출원일/등록일은 국제등록의 해당 일자로 소급되며, 영국 국내상표의 갱신일에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자는 이후 영국특허청에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 2021.1.1일 기준으로 계류중인 경우 출원인은 이후 9개월('21.1.1~'21.9.30) 이내에 영국특허청에 국내상표등록출원을 해야만 최초 EU지정일을 영국 국내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1.1일 이전에

마드리드 국제등록/사후지정 신청을 했지만 그때까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제등록 등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영국특허청에 출원하면 출원일이 소급 인정됩니다.

- 그러나,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영국 국내출원 시 출원일의 소급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과 관련해서는,

- 2021.1.1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만료예정인 영국 국내등록의 권리자에게 갱신안내통지(reminder notice)를 발송할 예정이고,
- 통지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에 갱신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할증료는 없습니다.
- 2021.1.1일 보다 앞서 6개월 전에 만료되어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국제등록에 대해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madrid/en/news/2020/news_0015.html

□ 베트남 수수료 징수 선언 철회 - 2020.9.1. 발효

- 마드리드 규칙(Rule) 34(2)(b)에 따른 선언을 철회함으로써,
- 2020.9.1일부터 베트남특허청은 마드리드 관련 출원(신청)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이용하는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0/madrid_2020_59.pdf

□ 콜롬비아 선언 철회 - 2021.1.4. 발효

- 마드리드 규칙(Rule) 40(6)에 따른 선언을 철회함으로써,
- 2021.1.4일부터 콜롬비아특허청은 마드리드 규칙(Rule) 27bis(1)에 따른 국제등록의 분할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0/madrid_2020_64.pdf

□ COVID-19 관련 개별국 상황

- 마드리드 국제출원 관련 대민 업무를 위해 재개한다고 국제사무국을 통해 공지한 특허청(상표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특허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특허청	업무 재개일	웹사이트
쿠바	2020. 10. 20.	http://www.ocpi.cu/
스페인	2020. 6. 25.	https://www.oepm.es/en/index.html
마다가스카	2020. 6. 2.	http://www.omapi.mg/
슬로베니아	2020. 6. 1.	http://www.uil-sipo.si/uil/

□ 개별 수수료 변동 - 국내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근거

회원국	구분	변경 수수료 (단위 : CHF)		발효일
		최초 1개 분류	추가 분류 (매 분류 마다)	
미국	출원 및 사후지정	460	460	'21. 2. 18.
	갱신	276	276	
앤티가 바부다	출원 및 사후지정	220 (분류의 수와 상관없이)		'21. 1. 3.
	갱신	102 (분류의 수와 상관없이)		
인도네시아	출원 및 사후지정	125	125	'21. 1. 3.
	갱신	156	156	
	* 6개월 유예기간	* 313	* 313	
베트남	출원 및 사후지정	142	142	'21. 1. 3.
	갱신	126	126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원 및 사후지정	191	20	'21. 1. 3.
	갱신	191 (분류의 수와 상관없이)		
캐나다	출원 및 사후지정	233	70	'21. 1. 1.
	갱신	282	88	
시리아	출원 및 사후지정	185	185	'20. 12. 16.
	갱신	185	185	
아르메니아	출원 및 사후지정	187	19	'20. 12. 16.
	갱신	187	19	
콜롬비아	출원 및 사후지정	231	115	'20. 11. 27.
	* 단체·인증 표장	* 307	* 154	
	갱신	126	62	
	* 6개월 유예기간	* 172	* 84	

회원국	구분	변경 수수료 (단위 : CHF)		발효일
		최초 1개 분류	추가 분류 (매 분류 마다)	
투르크메니스탄	출원 및 사후지정	228	91	'20. 11. 17.
	갱신	456	228	
잠비아	출원 및 사후지정	78	63	'20. 10. 11.
	갱신	261	209	
타지키스탄	출원 및 사후지정	320	25	'20. 10. 11.
	갱신	320	25	
아이슬란드	출원 및 사후지정	227	49	'20. 10. 3.
	갱신	227	49	
그리스	출원 및 사후지정 * 단체·인증 표장	127 * 634	21 * 106	'20. 8. 22.
	갱신 * 단체·인증 표장	116 * 581	21 * 106	
인도	출원 및 사후지정	124	124	'20. 8. 10.
	갱신	124	124	
멕시코	출원 및 사후지정	132	132	'20. 8. 10.
	갱신	127	127	
브라질	출원 및 사후지정	75(1차 납부)	135(2차 납부)	'20. 7. 18.
	갱신 * 6개월 유예기간	193 * 292	193 * 292	

☞ 개별국 수수료 현황은 [WIPO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4 국제사무국 공지 사항

□ Nice 분류 11판, 2021 버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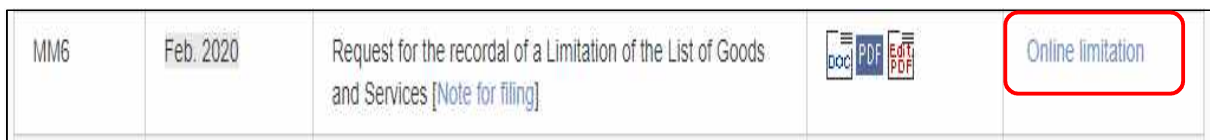
- 2021.1.1일부터 Nice 분류 11판 2021버전이 적용됩니다.
 - 2021.1.1.일부터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이 접수하는 국제출원 및 본국관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WIPO)에 접수된 국제출원(마드리드 프로토콜 Article 3(4))에 적용되며,
 - 국제등록건의 지정통지, 국제등록증, 공보 등에 지정상품 옆에 “NCL(11-2021)”로 표시됩니다.

- MGS(Madrid Goods and Services Manager)에도 2021버전이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데이터는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nice/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21.1.1.일 이전의 국제등록에 대해 2021버전으로 재분류하지는 않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20/madrid_2020_72.pdf

□ WIPO 감축신청서 온라인 접수 가능

- WIPO IP Portal을 통해 감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WIPO 계정이 있는 사용자의 경우, 국제등록의 일부/전부 지정계약당사자에 대한 상품·서비스의 감축신청(MM6)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드리드 서식 사이트(<https://www.wipo.int/madrid/en/forms/>)에서 MM6의 'Online limitation'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통해 신청 및 수수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출처 : <https://mailchi.mp/wipo/new-madrid-online-transaction-limitation-of-goods-and-services>

□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2021년 휴일 공지

- WIPO 국제사무국의 2021년 업무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New Year(새해) : 1. 1일(금)
- Easter(부활절) : 4. 2일(금) ~ 4. 5(월)
- Ascension(승천일) : 5. 13(목)
- Whitsun(강림절) : 5. 24(월)
- Jeûne Genevois(제네바 칸톤) : 9. 9(목)
- Christmas(크리스마스) : 12. 24(금)
- New Year's Eve(새해 전야) : 12. 31(금)

☞ 출처 : <https://mailchi.mp/wipo/madrid-system-non-working-days-in-2021>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서 양식 통합

○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국내상표출원의 보정서 통합

- 현재, 국제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지정건)에 대한 보정서 양식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절차보정)와 제41호(실체보정) 서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절차보정·실체보정에 대한 구분이 없는 국내상표출원의 보정서 양식인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정(보완)서 [↴](#)

(앞쪽)

【보정 구분】
 출원서 등 보정 상표건본의 보정 시각적 표현의 보정 [↴](#)
 수정정관(규약) 제출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
 심판청구서 등 보충 절차보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등 제출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등의 제출 [↴](#)

【제출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

【제출인】 [↴](#)
【성명(명칭)】 [↴](#)
【특허고객번호】 [↴](#)
【사건과의 관계】 [↴](#)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견본 제출 보정기간 연장

○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소리·냄새상표의 파일·견본 제출 기간의 연장

- 현재, 마드리드 지정건의 소리·냄새상표의 파일·견본 제출은 절차보정에 해당하여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1개월의 기한이 적용되어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 충분한 보정 기간을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상표법 시행규칙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에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부분에 제88조의2를 신설하여 제출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소리·냄새상표의 파일 또는 건본의 제출 등) ①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파일 또는 건본을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개(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건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표장을 포함한 국제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부터 3개월

□ 위임장 등 증명서류의 본인 확인절차 개선

○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서명과 대조·확인 절차 마련

- 현재 실무적으로 신청인 본인 확인을 요하는 서류 접수 시 대리인 위임장에 날인된 신청인 인감 또는 서명을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인감/서명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수권 서류(취하서, 복대리인선임신고서, 권리관계변경신고서, 국제출원 등 취하서, 국제출원취하서, 심판청구(일부)취하서)에 대해서는 특허고객번호의 인감/서명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등)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 다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 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6

마드리드 시스템 계약당사자 현황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계약당사자 현황

- 2020. 12월 말 현재 마드리드의정서 계약당사자는 106개국입니다.
- 2021.1.12일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가 107번째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F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LA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G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L	알바니아(Albania)	LR	라이베리아(Liber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S	레소토(Lesotho)
AT	오스트리아(Austr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U	호주(Australi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V	라트비아(Latv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A	모로코(Morocco)
BE	벨기에(Belgium)	MC	모나코(Monaco)
BG	불가리아(Bulgaria)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H	바레인(Bahrain)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G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BR	브라질(Brazil)	MK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BT	부탄(Bhutan)	MN	몽골(Mongolia)
BW	보츠와나(Botswana)	MW	말라위(Malawi)
BY	벨라루스(Belarus)	MX	멕시코(Mexico)
CA	캐나다(Canada)	MY	말레이시아(Malaysia)
CH	스위스(Switzerland)	MZ	모잠비크(Mozambique)
CN	중국(China)	NA	나미비아(Namibia)
CO	콜롬비아(Colombia)	NL	네덜란드(Netherlands)
CU	쿠바(Cuba)	NO	노르웨이(Norway)
CY	키프로스(Cyprus)	NZ	뉴질랜드(New Zealand)
CZ	체코(Czech Republic)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OAPI)

DE	독일(Germany)	OM	오만(Oman)
DK	덴마크(Denmark)	PH	필리핀(Philippines)
DZ	알제리(Algeria)	PL	폴란드(Poland)
EE	에스토니아(Estonia)	PT	포르투간(Portugal)
EG	이집트(Egypt)	RO	루마니아(Romania)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RS	세르비아(Serbia)
ES	스페인(Spain)	RU	러시아(Russia)
FI	핀란드(Finland)	RW	르완다(Rwanda)
FR	프랑스(France)	SD	수단(Sudan)
GB	영국(United Kingdom)	SE	스웨덴(Sweden)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폴(Singapore)
GH	가나(Ghana)	SI	슬로베니아(Slovenia)
GM	감비아(Gambia)	SK	슬로바키아(Slovakia)
GR	그리스(Greece)	S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HR	크로아티아(Croatia)	SM	산마리노(San Marino)
HU	헝가리(Hungary)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ID	인도네시아(Indonesia)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IE	아일랜드(Ireland)	SZ	에스와티니(Eswatini)
IL	이스라엘(Israel)	TH	태국(Thailand)
IN	인도(India)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R	이란(Iran)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S	아이슬란드(Iceland)	TN	튀니지(Tunisia)
IT	이탈리아(Italy)	TR	터키(Turkey)
JP	일본(Japan)	UA	우크라이나(Ukraine)
KE	케냐(Keny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UZ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KH	캄보디아(Cambodia)	WS	사모아(Samoa)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N	베트남(Viet Nam)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ZM	잠비아(Zambia)
KZ	카자흐스탄(Kazakhstan)	ZW	짐바브웨(Zimbabwe)

- 유럽연합(EM),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지정은 각 28개, 17개 국가를 포함

헤이그(Hague) 국제출원 소식

헤이그
(Hague)
국제출원

1.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공지사항
2.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 확대
3.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의 확대
4. 헤이그 신규 회원국 및 선언사항
5. 회원국 변동사항
6. 로카르노 분류 제13판 시행
7. 헤이그협정 체약국 현황

1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공지사항

□ 브렉시트 전환기(~'20.12.31.)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기준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EU상표, 디자인권은 영국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 따라서 자동승계 된 영국 내 권리에 대하여 권리자가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영국 국내법에 따른 디자인권(헤이그 협정에 대한 국제등록도 동일)으로 인정됩니다.
 - *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적용예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럽상표청(EUIPO)에 출원되어 전환기 내 등록결정이 통지된 건에 대해서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총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 그러나 전환기 종료시점에 유럽상표청(EUIPO)에 심사 계류 중인 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전환기 이후 9개월 이내(~'21.9.30.)에 영국특허청에 재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출원일을 소급해주며, 거절 결정된 건은 출원일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관련 유의사항

- 국제공개 관련하여,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으나 전환기간 종료일(20.12.31.) 시점에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 합니다.
- 또한 전환기 이후 출원(내년 1월 1일부터)부터는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시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EU와 반드시 별도로 영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2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 확대

□ 국내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 7개로 확대

- 특허청은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을 기존 3개 물품류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를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확대 (‘20.12.1. 시행) 】

기 존				+	추 가			
물품 분류	2류	5류	19류		1류	3류	9류	11류
대표 물품	의류	직물지	문구류		식품	가방·잡화	포장용기	보석·장신구

- 이로 인해 출원인은 더욱 신속한 디자인권의 권리확보 및 활용이 기대됩니다.

□ 헤이그 국제출원 지정수수료 변화

- 그동안 출원인은 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정할 경우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일부심사대상인 로카르노 분류 2,5,19류에 대해서는 표준지정수수료 3단계*를 납부하고 그 이외 류에 대해서는 개별지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 1개 디자인당 90스위스프랑, 같은 출원내 추가 디자인 1개당 50스위스프랑
 - ** 1개 디자인당 210스위스프랑
- 이번 일부심사 대상의 확대로 인해 표준지정수수료 3단계(개별 지정수수료보다 저렴한 수준) 대상이 7개류로 확대되었고,
- 또한 개별지정수수료의 인하(신규출원시 1디자인당 210스위스프랑 →184스위스프랑, 12.1부터)로 전반적 수수료 인하가 있습니다.

3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의 확대

□ 한-멕시코 간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의 확대

- 우선권 서류를 위한 WIPO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가 2018년 디자인 출원에 도입됨에 따라, 출원인은 증명된 사본을 제공하는 대신 우선권 서류를 DAS를 통해 교환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2020년 1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과 한국을 지정하거나, 해당 관청이 선출원 관청인 출원에 대해 DAS를 통한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며
- 2020. 11. 3.부터 한-멕시코 간 DAS를 통한 디자인 우선권 증빙 서류 교환이 시작되면서
 - 이로써 헤이그 출원에 DAS를 통한 서류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총 4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멕시코)
 -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공지사항-코드신청 및 이용방법을 참고 바랍니다.
 - (우리나라→브라질, 멕시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급한 WIPO 접근코드 필요
 - (브라질, 멕시코→우리나라) 브라질, 멕시코 특허청에서 발급한 WIPO 접근코드 필요

4

헤이그 신규 회원국 및 선언사항

□ 수리남(Suriname) - '20. 9. 10. 발효

- '20. 6.10 가입으로 74번째 헤이그 협정서 회원국이 되었으며, 65번째 1999년 개정협정국이 되었습니다.
-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 11(1)(a)에 따라 최대 공개연기 기한 12개월 선언
 - Article 17(3)(c)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최장 보호기간 15년을 부여

5 회원국 변동 사항

□ 최장 보호기간 변동 - 우크라이나

- '99년 협정 Article 17(3)(c) 및 공통규칙 Rule 36(2) 관련하여,
- 국내법에 따른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각국에 따라 상이한 보호기간을 국제출원 시 미리 확인하려면 WIPO홈 페이지- Hague- Key resources- Maximum duration of protection에서 확인하세요.

□ 개별지정수수료 변동 - 멕시코, 미국,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캐나다, 한국

- 헤이그 계약당사자는 Article 7(2)에 따라 개별 지정수수료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국내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근거하여 수시 변동하고 있습니다.

* 각국의 개별 수수료 변동 사항은 WIPO 홈페이지의 아래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wipo.int/hague/en/fees/individ-fee.html>

- 멕시코(Mexico) - '20. 9. 1.부터

개별지정수수료		구분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첫 번째 부분	1디자인/추가디자인	98/3
	두 번째 부분	1디자인/추가디자인	49/1
갱신	최초 갱신	1디자인/추가디자인	290/145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20. 10. 2.부터

개별지정수수료		구분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첫 번째 부분	일반/소기업/극소기업	989/495/247
	두 번째 부분	일반/소기업/극소기업	718/359/179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 '20. 12. 11.부터

개별지정수수료	구분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1디자인	589
	추가디자인	36
갱신	최초 갱신	1,019
	두 번째 갱신부터	1,586

- 러시아(Russia) - '21. 1. 1.부터

개별지정수수료	구분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1디자인	138
	추가디자인	29
갱신	최초 갱신	219
	두 번째 갱신	538
	세 번째 갱신	800
	네 번째 갱신	1,392

- 캐나다(Canada) - '21. 1. 1.부터

개별지정수수료	구분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디자인 당	288
갱신	최초 갱신	252

- 한국(Republic of Korea) - '20. 12. 1.부터

개별지정수수료	구분	금액 (스위스 프랑)
국제 출원	디자인 당	184
첫 번째 갱신	디자인 당	296
두 번째 갱신	디자인 당	699
세 번째 갱신	디자인 당	806

* 일부심사대상 로카르노분류 1,2,3,5,9,11,19류는 1개 디자인당 90스위스프랑, 같은 출원내 추가 디자인 1개당 50스위스프랑

6 로카르노 분류 제13판 시행

-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분류 (Locarno Classification) 개정
 - 로카르노 분류의 새로운 개정판(13판)이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모든 국제출원에 로카르노 분류 제13판을 적용하며. 이번 개정은 시행일 이전에 로카르노 이전 버전에 따라 분류된 국제 등록에 대해선 영향이 없습니다.
 - 로카르노 분류 제13판은 WIPO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locarno/en/>

7 헤이그 시스템 계약당사자 현황

- 헤이그협정 가입 계약당사자 현황
 - 2020. 12월 말 현재, 헤이그 협정 가입 당사자는 74개, 1999년 개정 협정에 가입한 계약당사자는 65개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L	알바니아(Alban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V	라트비아(Latvia)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MC	모나코(Monaco)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G	불가리아(Bulgaria)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K	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BW	보츠와나(Botswana)	MN	몽골(Mongolia)
BX	베네룩스(Benelux)	MX	멕시코(Mexico)
BZ	벨리즈(Belize)	NA	나미비아(Namibia)

CA	캐나다(Canada)	NO	노르웨이(Norway)
CH	스위스(Switzerland)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OAPI)
DE	독일(Germany)	OM	오만(Oman)
DK	덴마크(Denmark)	PL	폴란드(Poland)
EE	에스토니아(Estonia)	RO	루마니아(Romania)
EG	이집트(Egypt)	RS	세르비아(Serbia)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RU	러시아(Russia)
ES	스페인(Spain)	RW	르완다(Rwanda)
FI	핀란드(Finland)	SG	싱가폴(Singapore)
FR	프랑스(France)	SI	슬로베니아(Slovenia)
GB	영국(United Kingdom)	SM	산마리노(San Marino)
GE	조지아(Georgia)	SR	수리남(Suriname)
GH	가나(Ghan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HR	크로아티아(Croatia)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HU	헝가리(Hungary)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L	이스라엘(Israel)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S	아이슬란드(Iceland)	TN	튀니지(Tunisia)
JP	일본(Japan)	TR	터키(Turkey)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UA	우크라이나(Ukraine)
KH	캄보디아(Cambodi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N	베트남(Viet Nam)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WS	사모아(Samo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